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3월 2일

군산시 규칙 제502호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25세 이상 70세 이하인자”를 “25세 이상인자”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

제4조 제3항을 삭제 한다.

제5조를 삭제 한다

제6조에서 제17조를 제5조에서 제16조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 이·통장은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신설된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중에서 리·통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 자도 임명할 수 있다.</p>	<p>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 ----- ----- ----- ----- ----- ----- 25세 이상인 자 ----- -----, <단서 삭제></p>
<p>제4조(이·통장의 임기) ③ 이·통장 임기 중에 70세에 도달하여도 잔여임기를 보장한다.</p>	<p>제4조(이·통장의 임기) ③ <삭 제></p>
<p>제5조(이·통장의 정년) 이·통장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조(이·통장의 정년) <삭 제></p>
<p>제6조 ~ 제17조</p>	<p>제5조 ~ 제16조</p>
<p>제7조(복무) ② 이·통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p>	<p>제6조(복무) ② ----- 제5조 ----- ----- ----- ----- -----,</p>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문 동 선*

2012년 3월 2일

군산시 규칙 제503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별표2의 징계부과금기준”을 “별표2와 별표6의 징계부과금기준”로 한다.

별표 1의 징계기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u>라. 음주운전</u>	<u>별표 6과 같음</u>			
<u>마. 기 타</u>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2 의 징계부과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 ----- ----- ----- ----- 별표2와 별표6 의----- -----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관련)

[현행]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개정안]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6과 같음			
마.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 6]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제8조 관련)

[현행]

유 형 별	처리기준	비 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경징계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중징계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중징계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개정안]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군산시 자체감사결과 심의회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 

2012년 3월 2일

군산시 훈령 제287호

군산시 자체감사결과 심의회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 자체감사 실시결과 처리에 있어 감사담당관의 의견결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군산시 자체감사 결과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군산시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종합감사·부분감사(회계감사·특별감사) 및 기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결정
2. 감사원과 중앙부처의 위임 또는 대행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의 결정
3.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요구된 감사원·중앙부처 감사지적사항 및 타기관 비위통보사항의 조치계획의 결정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결정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

1. 특명·진정·정보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타기관장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계장이 되며, 감사담당관실 각 계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연직위원 이외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의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에서 회의내용 기록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 정본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된다.

② 심의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의회의는 필요한 경우 당해 사항의 감사공무원·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자문 또는 이해당사자의 설명·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 및 소명은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다.

제7조(결정사항의 효력) 심의회의 결정사항의 효력은 상위결정권자에 제시할 감사담당관실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공고 제2012-429호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군산시장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2010.9.23)에 따라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안제3조 4항)

-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

▶ 도로점용료 진출입로 산정요율(안 【별표1】 제4호)

- “토지가격의 0.025%”를 “토지가격의 0.02%”로 변경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 [참조 : 건설과, 군산시 시청로 1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 450-4481, FAX : 452-8172, E-mail : goldsun2223@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2조 중 “점용료 라”를 ““점용료” 라”로,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를 “구역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로, “각호”를 각각 “각 호”로, “기타”를 각각 “그 밖”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미”를 “1년 미”로, “1월미”를 “1월 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직경”을 “지름”으로, “1제곱미터이상”을 “1제곱미터 이상”으로, “1미터이상”을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제곱미터미”를 “1제곱미터 미”로,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개년도이상”을 “2개년도 이상”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로, “연간 점용료”를 각각 “연간 점용료”로, “당해년도”를 “해당년도”로, “조정산식에 의하여”를 “조정계산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정기준표중”을 “산정기준표 중”으로, “10퍼센트이상”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정기준표중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정기준표 중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2이상”을 “2 이상”으로, “관의 직경”을 “관 지름”으로, “전체의 관”을 “전체관”으로,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를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타 특별한 사정을”을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로, “기타”를 “및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년 미만일”을 “1년 미만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년이상일”을 “1년 이상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내”를 “해당년도 개시후 3월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 시”로,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의 규정에 따라”로, “자에 대하여”를 “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 -----.</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 “점용료” 라 ----- -----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 ----- ----- 각 호 ----- ----- ----- 그 밖 ----- ----- 그 밖 ----- ----- -----.</p>
<p>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	<p>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 ----- ----- 따라 -----. ② ----- ----- 1년 ----- 미 ----- ----- 1월 ----- 미 -----</p>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까지 산정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

---.
 ③-----

 ----- 지름-----
 ----- 1제곱
미터 이상 -----
 -- 1미터 이상-----

 -. -----
 ----- 1제곱미터 미-----
 -----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

④-----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
다)-----

 -----.
 ----- 도로점용 부분
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

 -----.

제4조(점용료 조정) ①-----
 ----- 2개년도 이상 -----
 ----- 제3조제1항에 따라 산
정한 연간 점용료-----

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 표중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 설치하는 경우의 관의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생략)

----- 연간 점용료-----

해당년도-----
----- 조
정계산식에 따라 -----
-----.

② ----- 산정기준 표 중 -----
----- 10퍼센트 이상 -----
-----.

③ ----- 산정기준 표 중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2 이상-----
----- 관 지름-----
----- 전체관-----

----- 지름-----.

제5조(소액부 징수) -----
---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
-----.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을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

②----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

-- 및 그 밖의 -----
----- 따라 -----
-.

③-----

----- 그
밖에 -----

-----.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
----- 따른다.

- 1. ----- 1년 미만일 ----

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
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
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
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
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
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
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
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
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
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
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
한다.

2. ----- 1년 이상일 -
----- 해당

----- 해당년도 개
시 후 3월 이내-----
-----.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 발급하
여야 -----.

②----- 징수 시 -----
----- 제외하고는 「지
방세법」-----.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
-----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

----- 자-----

----- 따른다.

군산시 공고 제2012-431호

공 고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 나.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

현 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현 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1. 지방의료원 감면(제4조)	제38조	5. 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11조)	제60조
2. 한센정착농민 감면(제5조)	제17조의2	6. 신용보증재단 감면(제12조)	제56조
3. 지식센타 감면(제9조)	제58조의2	7. 벤처기업육성지구 감면(제15조)	제58조
4. 지방공사 감면(제10조)	제85조의2		

나. 미분양주택 감면 등 3개 감면사항의 감면대상 소멸 및 과세형평을 위한 감면규정 삭제(제7조, 제16조, 제17조)

- 미분양주택 감면, 기업도시 감면, 고용창출기업 감면

다. 현행 감면조례 시한 연장(2014년 12월 31일까지) 및 조문 정비

-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안 제3조)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한 사업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7조)
-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0-4297
 담당자 최광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군산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

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 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옥구농공단지
2. 서수농공단지
3. 성산농공단지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보칙

제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3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다.

군산시 공고 제2012-438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가.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일반직 공무원 정원 증원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한 별정직 보건 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
-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2.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공무원 총 정원 증원

1) 정원의 총수 변경 : 1,331명 → 1,344명 (+13명)

○ 사회복지직 순증분 정원조정

나. 사회복지직 확충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1) 일반직 증원 : 1,080명 → 1,111명 (+31명)

○ 사회복지직 증원 (+15명)

- 사회복지직 순증분 13명, 행정직 자연감소 대체 2명

○ 보건진료직 증원 (+18명)

- 별정직 18명 전환

○ 행정직 감원 (△2명)

- 행정직 자연감소 2명

2) 별정직 감원 : 32명 → 14명 (△18명)

- 별정직 18명을 일반직(보건진료)으로 전환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1) 기능10급 폐지 : 기능10급 48명 → 기능9급으로 전환

2)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제3조 관련)

○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4%이내	16%이내	22%이내	32%이내	26%이상
개 정	5%이내	18%이내	26%이내	51%이상	

3. 참고 사항

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통보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7081 (2011.10.4)호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공포 (2011. 8. 22)

○ 지방별정직의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보건진료 직렬 신설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2011. 6. 3)

○ 기능10급 폐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31명”을 “1,344명”으로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06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 1,319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5% 이내	11%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5% 이내	18% 이내	26% 이내	51%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5%	80% 이내	10% 이내	5%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44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111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1,029	-				
별정직 계	14	-				
6급 상당 이하 계	14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331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306명</p> <p>2. (생략)</p>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p> <p>1. (생략)</p> <p>2. 기능직 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6급</td> <td>7급</td> <td>8급</td> <td>9급</td> <td>10급</td> </tr> <tr> <td>비율</td> <td>4% 이내</td> <td>16% 이내</td> <td>22% 이내</td> <td>32% 이내</td> <td>26% 이상</td> </tr> </table> <p>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p> <p>3. (생략)</p> <p>4. (생략)</p>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2% 이내	32% 이내	26% 이상	<p>제2조(정원의 총수) -----1,344명</p> <p>----- 1,344명</p> <p>-----.</p> <p>1. ----- 1,319명</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기능직 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6급</td> <td>7급</td> <td>8급</td> <td>9급</td> <td>삭제</td> </tr> <tr> <td>비율</td> <td>5% 이내</td> <td>18% 이내</td> <td>26% 이내</td> <td>51% 이상</td> <td>삭제</td> </tr> </table> <p>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구분	6급	7급	8급	9급	삭제	비율	5% 이내	18% 이내	26% 이내	51% 이상	삭제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 이내	16% 이내	22% 이내	32% 이내	26% 이상																				
구분	6급	7급	8급	9급	삭제																				
비율	5% 이내	18% 이내	26% 이내	51% 이상	삭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p>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총계	1,331	-					총계	1,344	-				
정무직계	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080	-					일반직 계	1,111	-				
3급	1	1					3급	1	1				
4급	8	4	1	1	2		4급	8	4	1	1	2	
5급	73	33	3	3	7	27	5급	73	33	3	3	7	27
6급 이하 계	998	-					6급 이하 계	1,029	-				
별정직 계	32	-					별정직 계	14	-				
6급 상당 이하계	32	-					6급 상당 이하계	14	-				
연구직 계	4	-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3	1		연구사	4			3	1	
지도직 계	32	-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182	-					기능직계	182	-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12조) ▶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제4조(총액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총액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총액인건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점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22>

◀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

2. 적용범위

- 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에 한해 적용함
- 인용한 법령은 아래와 같이 약칭으로 표기 한다.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교육훈련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교육훈련법시행령**”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이하 “**인사규칙**”이라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2-439호

공 고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조직개편 및 일반직 공무원 정원 증원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한 별정직 보건 진료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
-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군산시 공무원 총 정원 증원

1) 정원의 총수 변경 : 1,331명 → 1,344명 (+13명)

○ 사회복지직 순증분 정원조정

나. 사회복지직 확충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1) 일반직 증원 : 1,080명 → 1,111명 (+31명)

○ 사회복지직 증원 (+15명)

- 사회복지 순증분 13명, 행정직 자연감소 대체 2명
- 본청 (6급 2, 9급 9명), 동 (9급 4명)

○ 보건진료직 증원 (+18명)

- 별정직 18명 전환

- 보건소 일반직 18명 증가 (보건진료 6급 6명, 7급 5명, 8급 7명)

○ 행정직 감원 (△2명)

- 행정직 자연감소 2명
- 동 2명 감소 (9급 2명)

2) 별정직 : 32명 → 14명 (△18)

- 보건소 별정직 18명 감소 (별정직 6~7급)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폐지

1) 기능10급 폐지 : 기능10급 48명 → 기능9급으로 전환

3. 참고 사항

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 통보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7081 (2011.10.4)호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공포 (2011. 8. 22)

- 지방별정직의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보건진료 직렬 신설

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2011. 6. 3) : 기능10급 폐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10급 관련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와 관련)

[별표]

[총괄]

기관별		합 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급별	직렬별										
총괄		1344	729	25	94	41	154	13	118	170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111	620	18	89	1	99	12	104	168	
3 급	소 계	1	1								
	행정	1	1								
4 급	소 계	8	4	1	1		2				
	행정	3	1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5 급	소 계	73	33	3	3		7	1	10	16	
	행정	16	14				2				
	해양수산	1	1								
	의무	1			1						
	시설	3	3								
	보건·의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별정	3		3							
	행정·사서	1					1				
	행정·사회	3	3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환경	1	1								
	행정·통신	1	1								
	보·환·공	1	1								
	행·농·보	1									1
	행·농·녹	1							1		
	행·농·환	1							1		
	행·보·간	1			1						
	행·시·해수	1									1
	행·시·녹	1	1								
	행·시·환	1					1				
	행·시·공	2									2
	행·환·녹	1					1				
	행·농·해수	1	1								
	행·사회·시	4									4
	행·사회·보	2									2
	행·사회·의기	1									1
행·농·공	1							1			
행·농·간	2							2			

	행·보·의기	1							1	
	행·시·사서	2							2	
	행·시·의기	1							1	
	행·시·통	1							1	
	행·농·시·해수	2					1	1		
	행·농·공·환	1						1		
	행·농·간·녹	1						1		
	행·농·보·환	1						1		
	행·사회·농·공	1						1		
6 급	소 계	257	154	6	16		25	3	30	23
	행정	75	52	3			7			1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전산	1	1							
	공업	2					2			
	농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	1							
	보건진료	6			6					
	시설	18	16				2			
	공업·시설	3	1				2			
	농업·시설	1	1							
	보건·식품	1	1							
	보건·간호	1			1					
	해양수산·환경	1	1							
	녹지·시설	2	2							
	전산·통신	1	1							
	시설·전산	1	1							
	농업·수의	2	2							
	행정·시설	21	19				2			
	행정·공업	5	2				2			1
	행정·농업	18	3					1	12	2
	행정·별정	4	2	2						
	행정·보건	3			1				2	
	행정·사서	3					3			
	행정·세무	9	9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녹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	31	14						10	7
행정·환경	3	2					1			
공업·환경	4	2				2				
보건·환경	1	1								
보·간·의기	7			7						
보·환·공	2	1				1				
시·환·공	2					2				
행·농·시	3						1	2		
행·농·해수	2	1						1		

	행·농·녹	2						2		
	행·보·간	1			1					
	행·보·환	1	1							
	행·전산·통	1	1							
	행·시·해수	1						1		
	행·시·녹	1	1							
	행·환·시	1	1							
	행·사·보·간	1	1							
	행·농·시·별	1		1						
7 급	소 계	349	208	5	25	1	32	4	29	45
	행정	136	88	4	1		11	1	5	26
	세무	2	2							
	사회복지	18						1	8	9
	전산	1	1							
	사서	5					5			
	공업	9	2				7			
	농업	7	7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6	6							
	보건	8	2		5		1			
	간호	6			5		1			
	보건진료	5			5					
	환경	6	5				1			
	시설	41	36	1			4			
	방송통신	2	2							
	식품위생	1	1							
	보건·식품	1	1							
	행정·시설	12	5					1	6	
	행정·농업	13	1			1		1	10	
	행정·별정	2	2							
	행정·사회	20	15							5
	행정·세무	23	18							5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전산	3	3							
	행정·환경	1	1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	1	1								
공업·환경	3	2				1				
보·간·의기	9			9						
공·환·보	1					1				
8 급	소 계	274	149	3	37		24	2	17	42
	행정	104	59	2			7	1	2	33
	세무	4	4							
	사회복지	9	1						2	6
	전산	3	2	1						
	사서	3					3			
	공업	10	6				4			
녹지	3	3								

	농업	1	1							
	해양수산	6	6							
	보건	17	5		12					
	의료기술	9			9					
	간호	2			2					
	보건진료	7			7					
	환경	3	3							
	시설	34	26			7		1		
	방송통신	2	2							
	세무·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11	6					5		
	행정·농업	10					1	7	2	
	행정·사서	1	1							
	행정·사회	13	12						1	
	행정·세무	9	9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3			3					
	전산·통신	1	1							
	공업·환경	2				2				
	간호·의기	3			3					
9급	소 계	149	71		7	9	2	18	42	
	행정	48	15			2	1	9	21	
	세무	10	10							
	사회복지	46	16				1	8	21	
	전산	2	2							
	사서	5				5				
	공업	3	3							
	농업	2	1					1		
	녹지	2	2							
	보건	8	1		6	1				
	의료기술	1			1					
	환경	2	2							
	시설	19	18			1				
	방송통신	1	1							
연구직	계	4			3	1				
연구사	소 계	4			3	1				
	환경연구사	1			1					
	학예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지도직	계	32			32					
지도관	소 계	3			3					
	농·생지도관	3			3					
지도사	소 계	29			29					
	농촌지도	29			29					
기능직	계	182	99	7	5	3	51	1	14	2

6 급	소 계	7	6					1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운전	1	1							
	사무	1	1							
	선박항해	2	1					1		
7 급	소 계	29	18		1		8	2		
	통신	1	1							
	전기	1					1			
	기계	6	2				4			
	선박기관	2	1					1		
	조무	4	2				2			
	운전	7	6		1					
	사무	5	4				1			
	선박항해	3	2					1		
8 급	소 계	40	24	1	2	1	11	1		
	통신	2	2							
	건축	1	1							
	전기	3	1				2			
	기계	8	4				4			
	선박항해	3	2					1		
	선박기관	2	2							
	조무	2	1				1			
	전화상담	1	1							
	운전	12	9		1	1	1			
	열관리	3			1		2			
	위생	1	1							
	사무	2		1			1			
9 급	소 계	106	51	6	2	2	32	1	10	2
	통신	2	1	1						
	전기	7	3				4			
	기계	11	5	1			5			
	선박항해	1							1	
	조무	7	2			1	4			
	전화상담	2	2							
	농림	1				1				
	운전	9	4	2	1		2			
	열관리	6	2				4			
	화공	1					1			
	위생	4	1				3			
	사무	41	31	2	1		7			
	사육	2					2			
사무·조무	12						1	9	2	
별정직	계	14	9			2	3			
6급	소 계	3	3							
	홍보연구원	1	1							
	비서	1	1							

	문화재연구원	1	1								
	소 계	11	6			2	3				
7급	농기계교육교관	2				2					
	보건위생감시원	2	2								
	공기업회계원	1					1				
	수영강사	2					2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박물관운영요원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총괄]					[별표]					[총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총괄	1331	718	25	94	41	154	13	118	168	총괄	1344	729	25	94	41	154	13	118	170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일반직 계	1080	609	18	71	1	99	12	104	166	일반직 계	1111	620	18	89	1	99	12	104	168
3급 소계	(생략)									3급 소계	(현행과 같음)								
3급 행정										3급 행정									
4급 소계	(생략)									4급 소계	(현행과 같음)								
4급 행정										4급 행정									
5급 소계	(생략)									5급 소계	(현행과 같음)								
5급 행정										5급 행정									
6급 소계	249	152	6	10		25	3	30	23	6급 소계	257	154	6	16		25	3	30	23
6급 행정	(생략)									6급 행정	(현행과 같음)								
6급 보건	1	1								6급 보건	1	1							
6급 보건진료										6급 보건진료	6			6					
6급 행정·사회	30	13								6급 행정·사회	31	14							
6급 행정·사회	(생략)									6급 행정·사회	(현행과 같음)								
6급 행·환·시	1	1								6급 행·환·시	1	1							
6급 행·환·시										6급 행·환·시									
6급 행·농·시·별	1		1							6급 행·농·시·별	1		1						
7급 소계	344	208	5	20	1	32	4	29	45	7급 소계	349	208	5	25	1	32	4	29	45
7급 행정	136	88	4	1		11	1	5	26	7급 행정	136	88	4	1		11	1	5	26
7급 세무	2	2								7급 세무	2	2							
7급 사회복지	18						1	8	9	7급 사회복지	18						1	8	9
7급 전산	1	1								7급 전산	1	1							
7급 사서	5					5				7급 사서	5					5			
7급 공업	9	2				7				7급 공업	9	2				7			
7급 농업	7	7								7급 농업	7	7							
7급 녹지	4	4								7급 녹지	4	4							
7급 수의	1	1								7급 수의	1	1							
7급 해양수산	6	6								7급 해양수산	6	6							
7급 보건	8	2		5		1				7급 보건	8	2		5		1			
7급 간호	6			5		1				7급 간호	6			5		1			
7급 보건진료										7급 보건진료	5			5					
7급 보건진료	(생략)									7급 보건진료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별표]											[별표]											
[총괄]											[총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8급	소 계	267	149	3	30		24	2	17	42	8급	소 계	274	149	3	37		24	2	17	42	
	행정	104	59	2			7	1	2	33		행정	104	59	2			7	1	2	33	
	(생략)											(현행과 같음)										
	간호	2			2							간호	2			2						
	(생략)											보건진료	7			7						
9급	소 계	138	62		7		9	2	18	40	9급	소 계	149	71		7		9	2	18	42	
행정	50	15				2	1	9	23	행정	48	15				2	1	9	21			
세무	10	10								세무	10	10										
사회복지	33	7					1	8	17	사회복지	46	16				1	8	21				
(생략)										(생략)												
기능직 계	182	99	7	5	3	51	1	14	2	기능직 계	182	99	7	5	3	51	1	14	2			
(생략)										(생략)												
9급	소 계	58	33	4	1	1	15		4		9급	소 계	106	51	6	2	2	32	1	10	2	
	통신	2	1	1								통신	2	1	1							
	전기	6	3				3					전기	7	3				4				
	기계	8	4	1			3					기계	11	5	1			5				
	선박항해	1							1			선박항해	1								1	
	조무	1	1									조무	7	2			1	4				
	전화상담	2	2									전화상담	2	2								
	농림	1				1						농림	1				1					
	운전	7	3	1	1		2					운전	9	4	2	1		2				
	열관리	4	2				2					열관리	6	2				4				
	화공	1					1					화공	1					1				
	위생	1	1									위생	4	1				3				
	사무	19	16	1			2					사무	41	31	2	1		7				
	사육	2					2					사육	2					2				
사무·조무	3							3		사무·조무	12						1	9	2			
10급	소 계	48	18	2	1	1	17	1	6	2	<삭제>											
전기	1					1				<삭제>												
기계	3	1				2				<삭제>												
조무	6	1			1	4				<삭제>												
운전	2	1	1							<삭제>												
열관리	2					2				<삭제>												
위생	3					3				<삭제>												
사무	22	15	1	1		5				<삭제>												
사무·조무	9						1	6	2	<삭제>												

현										개																																	
행										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별</th> <th>직급별</th> <th>직렬별</th> <th>합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보건소</th> <th>농업기술센터</th> <th>사업소</th> <th>읍</th> <th>면</th> <th>동</th> </tr> </thead> </table>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관별</th> <th>직급별</th> <th>직렬별</th> <th>합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보건소</th> <th>농업기술센터</th> <th>사업소</th> <th>읍</th> <th>면</th> <th>동</th> </tr> </thead> </table>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	면	동																																
별정직 계			32	9		18	2	3				별정직 계			14	9			2	3																							
6급	소 계		3	3								6급	소 계		3	3																											
	홍보 연구관		1	1									홍보 연구관		1	1																											
	비서		1	1									비서		1	1																											
	문화재 연구원		1	1									문화재 연구원		1	1																											
6~7급	소 계		18			18						<삭제>	<삭제>																														
	보 건 진료원		18			18							<삭제>																														
7급			(생략)									7급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2-440호

공 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주소 변경, 옥산면 · 회현면 · 임피면 보건지소의 신축으로 인한 주소 변경, 와룡 · 증석 보건진료소의 폐지로 인한 삭제
-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
 - 2011. 7. 29 기준, 지번 주소 병행 사용
 -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2. 주요내용

- 주소변경 : 군산시보건소, 옥산면보건지소, 회현면보건지소, 임피면 보건지소
- 주민 이용실적 저조 및 건물 노후 보건진료소 폐지
 - 와룡보건진료소, 증석보건진료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도로명주소법
-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 지침 (행안부 예규 제350호)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 063-450-423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개정2007.1.30, 개정2009.06.23, 개정2010.04.15>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제3항 관련)

1. 보건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851-1)	군산시 일원
대야분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지경리 778-2)	군산시 일원

2. 보건지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선제리 511-4)	옥구읍 일원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리 8-1)	옥산면 일원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8 (대정리 361-1)	회현면 일원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읍내리 215-4)	임피면 일원
서수면 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탐천로 596-3 (서수리 797-6)	서수면 일원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1 (발산리 461-2)	개정면 일원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고봉리 283-2)	성산면 일원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옥곶리 452)	나포면 일원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개야도리 237-1)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어청도리 294)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68 (선유도리 333-5)	옥도면 선유도리 인근 일원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옥봉리 1315-10)	옥서면, 미성동 일원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자유로 482 (오식도동 513)	오식도 및 비응도 공단 및 새만금 지역 일원

3. 보건진료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금 성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31 (금성리 85-1)	구평,금성,외류,내류,평유,죽동
금 암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청룡로 347 (화등리 404-12)	월암,원화등,석화,신구,마포, 하금암,상금암
당 북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외당원길 9-3 (당북리 860-5)	원당,회당,한림,백석,선교,신당
대 광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대광길 32-2 (광교리 36-22)	상광,중광,원두,삼길,광산,원접산, 신광
대 차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대차길 9 (지경리 316-10)	대차,소차,경창,함열촌,고산촌, 신촌,상리
무녀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65 (무녀도리 20)	무녀도1,무녀도2
열대자 보건진료소	군산시 신창안길 42 (산북동 2643-4)	산북동 24,25,26,27통(옥성,신창, 금성,평화),오식도동 일원
비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1길 6 (비안도리 240)	비안도,두리도
상장곶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상장곶길 16-3 (마룡리 438-2)	상장곶,하장곶,원용귀,신중용귀,운원
성 덕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293 (성덕리 산 106-1)	성덕,황동,요동,상흥
신 당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신당길 18 (학당리 305-5)	표산,용화,신학당,신당,풍신,풍성, 구울
신시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1길 7-1 (신시도리 105)	신시도
연 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연도2리 5-2 (연도리 55)	연도
우 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구읍 우포길 15 (수산리 45-48)	신평,원이곡,우포,신기,김제촌, 가산개정
원나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나포면 원나포2길 11-1 (나포리 643)	원나포,옥동,혜곡,신방,원장산, 서지,와촌,군둔
월하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월하산2길 5 (월연리 73-4)	옥삼,월하산,오봉,중야,용연
창 오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창오2길 6 (창오리 528-1)	창오,창안,상작,산곡,대명,우곡, 산남,작촌,구작
술 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임피면 술산길 16 (술산리 477-4)	하전,중전,상정,양지,주산,금암, 상주,계산,서항,중갈,상갈,하갈
하 제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서면 하제1길 72 (선연리 1286-11)	하제,중제,난산,신난산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8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수도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
	하 수 과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과	군산시 변영로 281 (사정동 164-1)
	시립도서관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798-1)
	문화회관관리과	군산시 대학로 308 (나운동 790-3)
	철새생태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성덕리 411-1)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1. 보건소		1. 보건소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나운3동 153-8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851-1)
대 야 분 소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8-2	대 야 분 소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지경리 778-2)
2. 보건지소		2. 보건지소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11-4	옥구읍 보건지소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21 (선제리 511-4)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23-39	옥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옥산면 여로2길 30 (옥산리 8-1)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3	회현면 보건지소	군산시 회현면 광지산길8 (대정리 361-1)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216-1	임피면 보건지소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1 (읍내리 215-4)
서수면 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797-6	서수면 보건지소	군산시 서수면 탐천로 596-3 (서수리 797-6)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61-2	개정면 보건지소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1 (발산리 461-2)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283-2	성산면 보건지소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고봉리 283-2)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옥관리 452	나포면 보건지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13 (옥관리 452)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237-1	개야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6길 22 (개야도리 237-1)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294	어청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8 (어청도리 294)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33-5	선유도 보건지소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68 (선유도리 333-5)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315-10	옥서면 통합보건지소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옥봉리 1315-10)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오식도동 513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자유무역 지역관리원 내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	군산시 자유로 482 (오식도동 513)

현 행		개 정 안	
3. 보건진료소		3. 보건진료소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금 성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금성리 85-1	금 성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배그매2길 31 (금성리 85-1)
금 암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화동리 404-12	금 암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청룡로 347 (화동리 404-12)
당 북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860-5	당 북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산면 외당원길 9-3 (당북리 860-5)
대 광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36-22	대 광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대광길 32-2 (광교리 36-22)
대 차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316-10	대 차 보건진료소	군산시 대야면 대차길 9 (지경리 316-10)
무녀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20	무녀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65 (무녀도리 20)
열대자 보건진료소	군산시 산북동 2643-4	열대자 보건진료소	군산시 신창안길 42 (산북동 2643-4)
비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240	비안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1길 6 (비안도리 240)
상장곶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438-2	상장곶 보건진료소	군산시 서수면 상장곶길 16-3 (마룡리 438-2)
성 덕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106-1	성 덕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293 (성덕리 산 106-1)
신 당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학당리 305-5	신 당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신당길 18 (학당리 305-5)
신시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05	신시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1길 7-1 (신시도리 105)
와 룡 보건진료소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408-1	<삭제>	
연 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55	연 도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도면 연도2리 5-2 (연도리 55)
우 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45-48	우 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구읍 우포길 15 (수산리 45-48)
원나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643	원나포 보건진료소	군산시 나포면 원나포2길 11-1 (나포리 643)
월하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73-4	월하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월하산2길 5 (월연리 73-4)
증 석 보건진료소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180-3	<삭제>	
창 오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28-1	창 오 보건진료소	군산시 성산면 창오2길 6 (창오리 528-1)
술 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477-4	술 산 보건진료소	군산시 임피면 술산길 16 (술산리 477-4)
하 제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86-11	하 제 보건진료소	군산시 옥서면 하제1길 72 (선연리 1286-11)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제2항 관련)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8조 제2항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사 업 소 명</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수도사업소</td> <td>수 도 과 군산시 조촌동 888</td> </tr> <tr> <td>하 수 과</td> </tr> <tr> <td rowspan="4">시설관리 사업소</td> <td>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사정동 164-1</td> </tr> <tr> <td>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수송동 798-1</td> </tr> <tr> <td>문화회관 관리과 군산시 나운동 790-3</td> </tr> <tr> <td>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142</td> </tr> <tr> <td>차량등록사업소</td> <td>군산시 조촌동 888</td> </tr> </tbody> </table>		사 업 소 명	위 치	수도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조촌동 888	하 수 과	시설관리 사업소	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사정동 164-1	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수송동 798-1	문화회관 관리과 군산시 나운동 790-3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142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조촌동 888	<table border="1"> <thead> <tr> <th>사 업 소 명</th> <th>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수도사업소</td> <td>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td> </tr> <tr> <td>하 수 과</td> </tr> <tr> <td rowspan="4">시설관리 사업소</td> <td>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164-1)</td> </tr> <tr> <td>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798-1)</td> </tr> <tr> <td>문화회관 관리과 군산시 대학로 308 (나운동 790-3)</td> </tr> <tr> <td>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성덕리 411-1)</td> </tr> <tr> <td>차량등록사업소</td> <td>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td> </tr> </tbody> </table>		사 업 소 명	위 치	수도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	하 수 과	시설관리 사업소	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164-1)	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798-1)	문화회관 관리과 군산시 대학로 308 (나운동 790-3)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성덕리 411-1)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
사 업 소 명	위 치																										
수도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조촌동 888																										
	하 수 과																										
시설관리 사업소	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사정동 164-1																										
	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수송동 798-1																										
	문화회관 관리과 군산시 나운동 790-3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142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조촌동 888																										
사 업 소 명	위 치																										
수도사업소	수 도 과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																										
	하 수 과																										
시설관리 사업소	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164-1)																										
	시립도서관 관리과 군산시 축동로 72 (수송동 798-1)																										
	문화회관 관리과 군산시 대학로 308 (나운동 790-3)																										
	철새생태 관리과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성덕리 411-1)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																										

군산시 공고 제2012-441호

공 고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조직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 주민생활지원국에 2개계 신설
 -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복지지원계 신설
 - 여성아동복지과에 드림스타트계 신설

○ **본청 · 직속기관 분장사무 조정 (안 제3조 별표1)**

- < **현 행**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	서비스연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지역육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 긴급복지업무전반 ○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계획 수립 ○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 < **개정안**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희망복지지원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 원 과	서비스연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지역육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	희망복지 지원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 긴급복지업무전반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 사례관리대상자 욕구조사설정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관련업무 ○ 방문대상자에 대한 상호정보공유, 방문형서비스 관리

- < 개정안 > 여성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계 (신설)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 ○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 ○ 통합사례관리 ○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 센터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건강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3. 참고 사항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따른 조직개편안
-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계(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 장 사 무 표(제3조 관련)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복지기획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 군경묘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 3.1절, 현충일행사 ○ 부랑인시설업무 ○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 의회 업무 관련 전반 ○ 공익근무요원 관리 ○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 저출산·고령화 대책 계획 수립 운영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 사회복지관련 행사 추진 ○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서비스연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지역육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희망복지지원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 긴급복지업무전반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 사례관리대상자 육구조사설정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관련업무 ○ 방문대상자에 대한 상호정보공유, 방문형서비스 관리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p>통합조사관리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급여대상자 신규신청자 조사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한 부모 가족 지원, 장애수당, 자활지원 등의 사업) ○ 복지급여대상자 보장 결정 및 통보 ○ 복지급여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 복지급여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관리, 급여생성 및 확정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활동평가 ○ 기초생활보장 중점관리 자격조사 ○ 상담실 운영
	<p>자원봉사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관리 및 사업지원 ○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 ○ 각종 자원봉사관련 행사 지원 ○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 여성자원봉사회 관리 및 지원
	<p>사회서비스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인지능력 향상(학습지도) 사업 ○ 이주여성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 ○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 ○ 지역역사문화체험서비스 ○ 관학협력 장애아동 및 청소년 지역사회 클럽운영서비스 ○ 청소년 캔두 프로그램 ○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사업 추진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추진 ○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추진
<p>복지지원 과 장</p>	<p>기초생활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및 부정수급자관리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 저소득층장학금지원사업 ○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관리 ○ 의료급여 특별회계 업무 ○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및 관리업무 ○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 나운영구입대아파트 신청 및 민원처리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 의료급여 상해외인 조사관리 ○ 장애인 보장구지원 관리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 기타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자활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운영 자활사업 추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반 자활사업 추진 ○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 자활 공동체 지원 ○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관련 업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너지효율사업 지원
	재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 ○ 장애인등록 및 관리 ○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장애인복지시설 입·퇴소 관리 ○ 장애인복지관련 법인 설립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연금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 ○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 ○ 기타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추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경로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복지업무기획 및 업무전반 ○ 기초노령연금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 ○ 노인일거리마련사업운영 추진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결연사업 ○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추진 ○ 노인건강진단사업 ○ 노인회운영 관리지원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 노인대학 신고 및 운영지원 ○ 노인복지기금관리 및 운영 ○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효친 업무 추진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주최 ○ 경로복지 관련 법인설립 추진 ○ 가출노인관리 운영 ○ 경로당 운영 지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추진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p>복지시설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실버타운조성 사업추진 ○ 노인취업알선 지원 ○ 경로우대시책 추진 ○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운영관리 ○ 경로당 설치신고 ○ 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운영지원 ○ 노인조건부시설 관리업무 ○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사업 추진 ○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 노인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 노인복지설치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 ○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 ○ 공·사설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 ○ 새마을회관, 모정관리
<p>여성아동 복지과장</p>	<p>여성정책 업무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시설물 유지 관리 ○ 일반 사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 여성단체 지도 육성 ○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 여성발전기금 관리 ○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관리 ○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통역요원 지원사업 ○ 국내 결혼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 여성아동복지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육지원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책 수립 ○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 ○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인가 ○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 ○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 취소 ○ 보육시설 평가인증 ○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소집 ○ 보육시설 예산·결산 승인 ○ 보육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 보육시설 시정 및 변경 명령 ○ 보육시설의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 ○ 보육시설의 장 업무정지 ○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청문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보육시설 행정쟁송 ○ 보육시설 현황 분기보고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 아동학대 예방사업 ○ 결식우려아동 급식(방학중, 학기중 공휴일) ○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 실종아동 보호 ○ 요보호아동 복지시설 입소 ○ 입양가정 지원 (일반, 장애아)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 및 지원 ○ 요보호아동 결연 ○ 퇴소아동 자립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지원 ○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설치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아동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드림스타트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 ○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 ○ 통합사례관리 ○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 센터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건강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여성교육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상담 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 성·가정폭력 보호시설지원 및 상담지원 ○ 피해자치료전담의료기관업무 및 응급키트관리 ○ 요보호 여성관리 및 보호 ○ 가출부랑 여성의 예방 및 선도 ○ 기지촌 지역 여성보호 및 교육 ○ 여성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여성 기술 기능 교육 ○ 취미 교실 운영 ○ 여성 사회 교육 ○ 교육 기자재 관리 ○ 교육성과의 분석 평가 ○ 교육 수료자 사후 관리 ○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납 ○ 가사도우미 운영 ○ 아동여성 보호 연대운영 ○ 여성교육장 시설물 유지 관리 ○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변경, 폐지신고 ○ 보호시설 입·퇴소관리 ○ 보장시설수급자 책정 및 생계비 지원 ○ 성매매예방 교육 ○ 공유재산 관리(월명동 18-14) ○ 여성 취업지원사업 운영 ○ 기타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청 소 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 시설신고 처리 및 시설위탁 운영 관리 ○ 청소년 단체 지도관리 및 지도감독 ○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 ○ 각종 청소년 복지 행사 개최 ○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 ○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 ○ 비행 청소년 선도 보호 ○ 청소년 복지 진흥업무 전반 ○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 과태료 처분 및 행정소송 처리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운영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청소년 보호 위원회 권한중 위임되는 사항 ○ 소년수련시설 허가관련 신청접수·협의·검토·허가·변경허가 ○ 수련시설 운영의 폐지신고 및 폐지제한 ○ 수련시설등록관련신청접수·협의·검토·등록·변경등록·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기록·통보 ○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 명령 ○ 수련시설의 보험 가입 ○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관리 및 감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분청 소관]			【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분청 소관]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서비스 연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지역육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 긴급복지업무전반 ○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주민생활 지원과장	서비스 연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지역육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li style="color: red;"><삭제> <li style="color: red;"><삭제> ○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li style="color: red;"><삭제> <li style="color: red;"><삭제> ○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li style="color: red;"><삭제> <li style="color: red;"><삭제> <li style="color: red;"><삭제> <li style="color: red;"><삭제> <li style="color: red;"><삭제>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외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신설>	<신설>	주민생활 지원과장	희망복지 지원계 업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 긴급복지업무전반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 사례관리대상자 육구조사설정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 관련업무 ○ 방문대상자에 대한 상호정보공유, 방문형서비스 관리

현 행			개 정 안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관피소장	업무 분야	분 장 사 무
여성아동 복지과장	<u><신설></u>	<u><신설></u>	여성아동 복지과장	<u>드림 스타트</u> <u>업무분야</u>	<ul style="list-style-type: none"> <u>0 드림스타트 운영 총괄</u> <u>0 드림스타트센터 청사 관리</u> <u>0 통합사례관리</u> <u>0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u> <u>0 센터지원체계 구성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u> <u>0 인지/언어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u> <u>0 정서/행동 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u> <u>0 건강분야 서비스기획 및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u>

군산시 공고 제2012-445호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 정관과 관련

5.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안 제3조)

나. 제4조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 제2항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제5조 기구 및 제6조 임원에 관한 사항 중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20이하를 15인 이하로 개정하고, 운영위원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개정함.(안 제5조)

라. 제7조 사무장 관련은 삭제하고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위원의 해촉,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 2012. 3. 2 ~ 3. 21
 - (3) 규제심사 : 2011. 3월중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1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건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
자명)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370/ 군산시 수송동로 58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전화 : 063-460-3282, 팩스 : 063-468-4763)
-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담당자 성낙영
(063-460-328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은 삭제 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제3조제7호 중 “임원 및 직원”을 “임원”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20인이내”를 “15인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20인이내”를 “15인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임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운영협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정) ① 협의회는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① ~ ② (생략) ③ 협회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2조(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3조(정관) 협회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u> 6. (생략) 7. <u>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u> 8. (생략)	제3조(정관) ----- -----. 1. ~ 4. (현행과 같음) 5. <u>운영협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u> 6. (현행과 같음) 7. <u>임원</u> ----- 8.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① <u>협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u>	제4조(협회의 기능) ① <u>협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u> 1. <u>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u> 2. <u>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u> 3. <u>그 밖에 협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u> ② <u>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u> 1. <u>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u> 2. <u>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건의</u> 3. <u>그 밖에 협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u>
제5조(기구) ① <u>협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u> ② ~ ④ (생략)	제5조(기구) ①----- <u>15인</u> <u>이내</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임원) ① <u>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u>	제6조(임원) ①-----.

1. 2. (생략)

3. 운영위원 20인 이내

4. (생략)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④ (생략)

제7조(사무장) ① 협회회의 사무실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 ① 협회회는 진료수입·회원의 회비·보조금·찬조금·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회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③ 협회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협회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협회회 감사는 세입·세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과 결산 결과를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1. 2. (현행과 같음)

3. ----- 15인 이내

4. (현행과 같음)

②----- 선출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협회회장 활동수당) 운영협회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운영협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운영협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① 협회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2-23호

개정동 운동장~쌍천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도근점(12점) 측량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일

군 산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토지소재	설치년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명 칭	번 호	X(m)	Y(m)			
지적도근점	51854	274070.54	177366.90	사정동 562-19	2012. 1. 17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	51855	274102.94	177431.96	사정동 488-6	"	"
"	51856	274142.88	177515.69	개정동 654	"	"
"	51857	274176.68	177561.89	사정동 681	"	"
"	51858	274229.30	177590.76	사정동 544-3	"	"
"	51859	274240.03	177630.65	사정동 565-2	"	"
"	51860	274325.87	177868.65	사정동 592-2	"	"
"	51861	274334.37	177934.05	사정동 산42-1	"	"
"	51862	274379.72	178016.27	개정동 426-2	"	"
"	51863	274312.45	178039.34	개정동 436-3	"	"
"	51864	274288.84	178086.38	개정동 437-7	"	"
"	51865	274483.92	178452.51	개정동 667	"	"

군산시 고시 제2012-25호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군산대교차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군산대교차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2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신관동, 미룡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 군산대교차로)
 - 나. 명 칭 : 군산대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결 정	실 시 계 획						미조성	비 고
			폭원(m)		연장(m)		면적(m ²)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광 장	광장 12 (군산대교차로)	57,212m ²					50,418	56,189 (증 5,771)	1,023m ²	
도 로	광로 2-1 (국도21호선)	연장16,755 m 폭 50m	30	30~5 0	16,75 5	16,75 5	502,65 0	505,138 (증2,48 8)	L=16,755 m B=20m	
도 로	대로 1-5 (대 학 로)	연장2,585m 폭35m~45 m	35	35~4 5	2,585	2,585	90,475	91,416 (증 941)	-	
계						19,34 0		652,743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건설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1. 11. ~ 201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 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신관동 41-8	답	1,428	1		국(교육인적자원부)			광장
2	신관동 41-15	도	1,134	114		국(건설교통부)			"
3	신관동 41-16	도	947	376		국(건설부)			"
4	신관동 41-22	도	167	48		국(건설교통부)			"
5	신관동 41-23	답	269	262		국(건설부)			"
6	신관동 41-24	도	14	14		국(건설부)			"
7	신관동 41-38	답	8	2	이삼세	군산시 소룡동 1393-70			"
8	신관동 42-80	도	578	50		국(농수산부)			"
9	신관동 42-93	구	45	45		국(농수산부)			"
10	신관동 42-156	구	19	19		국(교육과학기술부)			"
11	미룡동 287-5	답	928	795	이정희	서울마포구성산동 256-12 이레쉐르빌 301	군산신용 협동조합, 최민규	근저당 지상권	"
12	미룡동 287-26	도	1,388	6		국(건설부)			"
13	미룡동 287-29	도	1,081	3		국(건설부)			"
14	미룡동 287-30	도	1,006	223		국(건설부)			"
15	미룡동 287-35	도	172	41		국(농수산부)			"
16	미룡동 287-36	구	226	2		국(농수산부)			"
17	미룡동 287-40	도	232	92		국(건설부)			"
18	미룡동 287-41	도	396	195		국(건설부)			"
19	미룡동 287-42	도	135	74		국(건설부)			"
20	미룡동 287-43	도	466	294		국(건설부)			"
21	미룡동 287-44	도	204	204		국(건설부)			"
22	미룡동 287-50	도	24	24		국(농수산부)			"
23	미룡동 287-57	답	1,002	33		군산시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24	미룡동 287-58	답	1,603	160		군산시			광장
25	미룡동 287-59	답	55	55		군산시			"
26	미룡동 287-60	도	69	69		국(건설교통부)			"
27	미룡동 287-61	도	23	23		국(건설교통부)			"
28	미룡동 287-62	도	102	102		국(건설교통부)			"
29	미룡동 287-63	도	65	65		국(건설교통부)			"
30	미룡동 287-64	구	17	17		국(농수산부)			"
31	미룡동 287-66	답	9	1	박종자	군산시 미룡동 287-65			"
32	미룡동 287-68	답	277	123	최민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47-9	군산신용 협동조합, 최민규	근저당 지상권	"
33	미룡동 287-69	답	862	769		국(교육과학기술부)			"
34	미룡동 287-70	답	349	349	윤종백	군산 나운동 866-1 유원@3동606호	(주)한일상호 저축	근저당,지 상권	"
35	미룡동 287-71	답	700	700	심재복	옥구군 미면 신관리 194			"
36	미룡동 287-72	답	80	80	이삼세	군산시 소룡동 1393-70			"
37	미룡동 287-74	답	327	327		국(교육과학기술부)			"
38	미룡동 287-75	답	14	14	박종자	군산시 미룡동 392			"
	소계	38 필지		5,771					광장
39	신관동 41-14	도	635	314		국(건설부)			광로
40	신관동 41-15	도	1,134	356		국(건설교통부)			"
41	신관동 41-17	도	394	38		국			"
42	신관동 41-21	도	44	44		국(건설부)			"
43	신관동 41-22	도	167	111		국(건설교통부)			"
44	신관동 41-28	도	34	6		국(건설교통부)			"
45	신관동 41-31	도	16	8		국(재정경제부)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46	신관동 41-32	답	28	27		국(교육과학기술부)			광로
47	신관동 41-33	답	14	1		국(건설교통부)			"
48	신관동 42-80	도	578	39		국(농수산부)			"
49	신관동 42-120	구	15	8		국(농수산부)			"
50	신관동 130-1	도	618	163		국(건설부)			"
51	신관동 130-5	도	277	167		국(건설교통부)			"
52	신관동 131-2	도	1,326	309		국(건설부)			"
53	신관동 135-1	도	823	196		국(건설부)			"
54	신관동 136-3	도	2	2		국(건설부)			"
55	신관동 136-4	도	588	149		국(건설부)			"
56	신관동 136-7	도	18	9		국(건설교통부)			"
57	신관동 137-2	전	6	4		국(건설부)			"
58	신관동 137-4	도	13	8	문태녀	옥구군 미면 신관리 92			"
59	신관동 137-5	도	40	40		국(건설부)			"
60	신관동 137-6	도	384	65		국(건설부)			"
61	신관동 138-1	도	43	42	조한구				"
62	신관동 138-3	도	193	42		국(건설부)			"
63	신관동 139-1	도	20	3		국(농수산부)			"
64	신관동 139-2	도	506	26		국(건설부)			"
65	신관동 153-1	도	116	26		국(건설부)			"
66	신관동 154-1	도	114	65		국(건설부)			"
67	신관동 172-1	도	80	51		국(건설부)			"
68	신관동 173-1	도	93	68		국(건설부)			"
69	신관동 174-1	도	156	8		국(건설부)			"
70	신관동 941-18	도	394	93		국(건설부)			"
	소계	32 필지		2,488					광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순 번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71	신관동 1-1	도	898	339		군산시			대로
72	신관동 1-2	학	136	136		국(교육과학기술부)			"
73	신관동 2-7	전	117	117	최태엽	서울 동작구 사당동 303-56			"
74	신관동 2-8	전	23	23	김용환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2 한강우성@ 102-605			"
75	신관동 940-3	도	16	16		국(교육과학기술부)			"
76	미룡동 287-69	답	862	93		국(교육과학기술부)			"
77	미룡동 287-73	구	70	70		국(농수산부)			"
78	미룡동 315-5	도	25,237	147		군산시			"
	소계	8 필지		941					대로
	합계	78 필지		9,200					전체

군산시 고시 제2012-26호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2월 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km)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경 과 지				
기정	12	전기공급 설비	군 산 변전소	새만금 변전소	임피면 보석리	30.296	693,246	군산시 고시 제2009-120호 (2010.1.4)	
변경	"	"	"	"	"	30.390 (증0.094)	695,222 (증1,976)	-	

2. 군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27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대표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 된 대표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1. ~ 3.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34외 76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변경 : 군산시 나운로 20-1 외 38건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폐지 : 군산시 삼화안길 30-1외 8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대표지번 변경 : 군산시 개정면 원아산2길 37-2외 31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3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3월 2일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867-7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소로1-56)사업
 - 2) 명 칭 : 은파웨딩홀옆 도로확장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결정조서			기개설			금회 실시계획인가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폭원 (m) (총폭원)	연장 (m)	확폭면적 (m ²) (총 면적)	
도로	소로1-5 6	10	127	1,300. 9	6	127	821.5	4 (10)	127	479.4 (1,300.9)	
계			127	1,300. 9		127	821.5		127	479.4 (1,300.9)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3. ~ 2013.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나운동	867-7	대	1,091	9.0	현진이	제주시 연동 279-2 벽강하이본@601	전북은행		근저 당
						박영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1249-139			
2	나운동	870-2	대	539.5	128.7	정성호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6-1003			
						김용현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3-301			
3	나운동	870-1	대	523.7	53.6	김용현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3-301			
						정성호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6-1003			
4	나운동	863-13	대	870.5	92.6	안이실	군산시 조촌동 부향하나로@426	전북은행 군산시	군산시 금광동 삼성@2-403	근저 당
5	나운동	869-14	도	671.1	20.5	김주철				
6	나운동	869-2	대	368.3	57.3	김수환	익산시 남중동2가 364-1			
7	나운동	869-16	대	231.4	51.8	임옥수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286			
8	나운동	869-1	대	264.5	65.9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			
계	8 필지			4,064.1	479.4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번	지장물		편입물건	편입 량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나운	870-2	상가	1동	190.08	정성호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 106-1003			
			수목	3주	2.34					
			화단	1식		김용현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3-301			
2	나운	870-1	수목	1주		정성호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6-1003			
			웬스	1식	김용현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 103-301				
3	나운	869-13	웬스	1식		안이실	군산시 조촌동 부향하나로@ 426			
4	나운	869-2	상가	1동	119.93	김주철	익산시 남중동2가 364-1			
			브릭담	1식	1.96					
5	나운	869-16	주택및 상가	1동	268.4	김수환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286			
			화장실	1동	6.02					
			브릭담	1식	47.85					
6	나운	869-1	상가	1동	149.355	임옥수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			
			화장실	1동	7.2					

군산시 공고 제2012-406호

재외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 및 제218조의10제1항에 따라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회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9

군 산 시 장 (인)

1. 열람기간

- 2012년 3월 3일부터 2012년 3월 7일까지 (공휴일에도 열람가능)

2.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

3.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 고
옥구읍사무소	옥구읍 옥구로 6	
옥산면사무소	옥산면 산성로 200	
회현면사무소	회현면 회현로 181	
임피면사무소	임피면 남상2길 1	
서수면사무소	서수면 항쟁로 193	
대야면사무소	대야면 석화로 7	
개정면사무소	개정면 바르메길 42	
성산면사무소	성산면 송호로 222	
나포면사무소	나포면 나포초교길 9	
옥도면사무소	옥도면 내향2길 125	
옥서면사무소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9	

장 소 명	소 재 지	비 고
해신동주민센터	중양로 224	
월명동주민센터	구영1길 138-2	
삼학동주민센터	오룡1길 60	
신평동주민센터	대학로 215	
중양동주민센터	신영3길 11	
홍남동주민센터	월명로 386	
조촌동주민센터	조촌로 102	
경암동주민센터	경암3길 56	
구암동주민센터	세풍길 21	
개정동주민센터	번영로 339-5	
수송동주민센터	동수송1길 7	
나운1동주민센터	신설3길 3	
나운2동주민센터	나운3길 16	
나운3동주민센터	부곡1길 25	
소룡동주민센터	설림5길 83	
미성동주민센터	미성문화길 4-5	

4. 인터넷 열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unsan.go.kr>

5. 인터넷 열람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초기화면 참조

가. 선거인명부 열람화면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 검색

▶ 존재시 : 투표구, 등재번호, 투표장소 확인

▶ 존재하나 중복자일 경우 :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추가 입력 후 재 조회

나. 재 조회 후에도 중복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군산시 공고 제2012-421호

공 고

- 1. 군산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 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7일

군 산 시 장

가. 정비구역 지정

①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신설	군산시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군산시 금광동 156-1번지의외 147필지	79,374	

② 사업시행계획서 주요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 (나)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에 관한 계획
- (라) 기타 시행규정(정비사업명칭, 시행년도 및 시행자, 국·공유지조서 등)

③ 공람 공고기간 : 2012. 3. 2 ~ 2010. 3. 15(공고일로부터 14일간)

④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군산시청 건축과

⑤ 관련도서 열람 : 군산시청 건축과 비치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450-4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422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2.

군 산 시 장

1. 공인신조 사유 : 군산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금출납
2.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2. 2. 22.
3. 신규등록공인 인영

연번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사유
1	복지지원과	군산시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금출납원인		군산시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금출납